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일시 : 2010년 8월 18일(수) 오전 10:00~12:00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층 세미나실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부일정】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10	개회 및 발표자 소개	양계민 연구위원
10:10 ~ 10:20	환영인사	이명숙 원장
10:20 ~ 11:20	발 표	오경석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11:20 ~ 12:00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사회 : 김승경 연구위원)
12:00	폐 회	양계민 연구위원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¹⁾

오경석(한양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주의는 이주의 보편화, 인권 개념의 확산,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의식, 그리고 문화적 가치의 부상과 연동된 정의 개념의 재규정 등과 관련된 새로운 양상의 사회적 결사(곧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정치 철학이요, 정치 지향이자,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다문화주의의 핵심에 근대적 제도와 신념의 총화로서의 근대 국가 체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재규정의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도전이 되었던 국가의 응전이 되었던 다문화주의는 국민들 내부의 문제로 제한되었던 ‘국민성’, ‘시민권’, ‘국가 주권’의 문제를 국민과 이주민, 그리고 국민과 소수자 사이의 문제로 개방하는 과제를 회피할 수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매우 독특하고 모순적이다.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 국가를 재규정하는 문제가 생략되어 있다. 국민성과 시민권을 개방적으로 재구성하는 문제 역시 간과되고 있다. 그 결과 다문화주의를 통해 근대 국가는 재동원되고, 이주민 대중은 인종화되며, 사회동질성은 강화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다문화가 이주민과 종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과 문화의 다원성’을 보장하는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방식은 과연 어떤 것일까?

1) 이 글은 오경석의 여러 강연문과 발제문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참고문헌에 소개한 것 이외의 원문의 출처는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논문이 아닌 관계로 본문 인용문들의 출처 역시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1. 다문화주의의 네 가지 키워드

1) 이주

이주를 통해 특정한 국가의 인구 구성은 양적으로 변화한다. 인구 구성의 양적 변화는 사회관계의 질적 변화에 대한 요청을 낳게 된다. 국민과 시민, 정치적인 소속감과 문화적인 정체감, 법적 자격과 사회적 기여도를 동일시하던 근대적인 관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국가는 비국민 소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된다.

2) 인권

‘인권’이라는 가치가 전지구 사회를 묶어주는 새로운 이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구 국가들이 구사했던 초기 이주민 정책은 이민자들을 방치하거나, 격리시키거나, 추방하는 것이었다. 국가 주권이 (개개인의) 인권에 우선했던 ‘국가의 시대’에 국가가 ‘비국민’ 이민자들을 ‘비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권 이념의 확산은 ‘비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지위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3) 소수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근대의 양대 정치 체제 모두에 의해 억압되었던 ‘소수자’들이 민권 운동과 탈냉전 이후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복권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는 ‘계급’

이라는 이름으로, 체제 내부의 ‘문화적 소수자’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정치적인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소수자 정치는 재현과 대의의 정치를 넘어 ‘비통합주의, 당사자주의, 자기결정권’ 등을 지향한다.

4) 문화적 정의

‘탈결핍(탈물질)’사회의 도래와 함께 ‘문화’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있다. 문화는 더 이상 정치나 경제의 종속 변수로 취급되지 않는다. 문화적 권리는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적 권리, 연대와 발전의 권리, 젠더권”과 함께 5세대 시민권으로 평가된다. 문화적 시민권의 부상은 사회 정의의 기축을 분배(justice of re-distribution)로부터 인정의 영역(politics of re-cognition)으로 확장시킨다.

2. 다문화주의의 이중적 위상과 주요 의제

근대 민족 국가(nation-state)는 구성원들에게 민족(혹은 국민)이라는 동질적인 정체성을 부여(혹은 강요)함으로써 행정 권력과 사회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는 보편적인 시민권의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민족과 국민, 그리고 시민 사이의 허구적인 동일시에 근거해 내적인 통합성을 유지하고, 타민족, 비국민, 비시민에 대한 폭력적인 배제를 통해 외적인 경계를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국가 주권’을 정당화했던 정치체제가 근대 민족 국가인 셈이다.

그러나 이민자들과 소수자들이 정치세력화하면서 근대 국가의 전통적인 통치 기제(영토주의)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이민자들과 소수자들에 의해 민족과 국민, 그리고 시민 사이의 동일성 가정의 허구성과 그에 근거했던 포섭과 배제의 이분법의 자의적인 폭력성이 폭로되기 때문이다. 근대 국가는 자신의 내적 통합성과 외적인 경계를 새롭게

규정해야만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훼손된 내적 통합성을 복원하되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동일성 가정을 대체할 새로운 통치 논리가 필요해지는데 이 때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이념이 다문화주의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다문화주의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통합성을 지속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도전이 되었든 국가의 응전이 되었든, 다문화주의의 핵심 의제가 ‘국가를 재규정’하는 문제로 모아짐을 의미한다. 다문화주의가 ‘좌와 우’라는 전통적인 정치적 이분법을 무효화시키는 새로운 정치이데올로기로 평가받는 사정은 이런 점과 관련된다. 전통적인 민족 국가는 다문화주의의 타겟이자, 출발점인 셈이다. 국가의 재규정은 구체적으로 ‘국민 자격(혹은 민족 자격)’(peoplehood or nationhood)을 개방적으로 재규정하고 그와 연동시켜 ‘시민권’을 확장하는 과제로 수렴된다. ‘국민’의 범주를 “시민들과 외국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정으로 확장하는 과제와 ‘시민권’을 국적이나 민족성, 혹은 문화적 소속감을 가로질러 새롭게 규정하는 과제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문화주의자들의 공통적 고민거리가 된다. “국민 국가 공동체의 윤리적, 정치적 자기 이해” 자체가 다문화주의적인 성찰과 실천의 핵심 과제가 되는 셈이다.

3. 다문화 사회의 조건

다문화 사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모색될 수 있다. 우선 국가주의(민족-국가의 무오류성에 대한 신화적 믿음)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비판이 필요하다. ‘국가’는 강요된 동질성과 타자로서의 소수자에 대한 합법적인 배제와 차별이 이루어지는 근간이자 거점이기 때문이다. ‘다원적인 포용’을 핵심으로 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국가는 다만 “계몽의 대상”

일 뿐이다. 다원적이며 민주적인 사회관계는 주체와 타자 사이의 힘과 덕의 불평등을 ‘진리’화했던 근대의 주체 철학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과 개정의 노력 역시 요구한다. 주체 철학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수자로서의 주체, 곧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석하고 개방적인 협상의 대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다문화란, “우리(혹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혹은 나)는 무엇인가? 왜 이것이 우리(혹은 나)이며, 우리(혹은 나)의 문화인가?”와 같은 불편한 질문들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아내는 작업과 나뉘어질 수 없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타자에 대한 차별이 단순히 제도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주민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며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난다. 다문화 사회를 모색하는 일은 결코 법과 제도 및 정책을 개선하는 수준으로만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 “다문화 사회란 어떤 다수 집단도 ‘보편(표준)의 지위’ 혹은 ‘주류의 권위’를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향해 ‘소수자’인 사회”에 다름 아니다. ‘다수 문화’ 자체가 여러 ‘하위 문화’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가 곧 다문화 사회일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중심’과 ‘표준’, ‘주류’와 ‘다수’의 위상을 누렸던 기존의 인식틀과 제도들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과 비판, 그리고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탓이다. 제도, 사회, 심리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같아져야 한다는 강박’과 ‘다른 것은 틀린 것(나아가 불순한 것)’이라는 편견(그리고 그러한 편견을 강요하는 구조적 강제와 폭력)이기 때문이다.

4. 한국의 다문화주의: 뜨거움과 석연치 않음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다문화주의 열풍, 그것은 그 규모와 속도만을 주목하는 경우, 틀림없이 이주민 대중을 향한 우리 사회의 열애라고 평가해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한국은 이민국가가 아니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평등하게’ 어울려 사는 문제를 고민해볼 기회와 경험이 별로 없었다는 뜻이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동질성의 압력이 강한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로 여겨질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헌데 그런 한국 사회에서 몇 년 전부터 가히 폭발적(explosive)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문화 열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동네 유치원에서도,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다문화는 이제 낯선 용어가 아니다. 새로 건립된 다문화와 관련된 공공 시설들은 그 수요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몇몇 지역은 아예 ‘다문화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의 사회교육 시설은 다문화 ‘전문 학원’이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단기간의 속성 과정을 통해 ‘다문화 지도자’, ‘다문화 전문가’ 등으로 불리우는 다양한 의사 전문가 집단이 양산되는데 그런 곳에는 수강생들로 빈자리를 찾기 어렵다. 언론과 대중 매체에도 다문화 담론이 범람한다. 1990년대를 통털어 2백 여건에 불과했던 다문화 관련 기사가 2007년에는 무려 3만 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폭증했다. 2006년 전까지 한 해에 한 자리 수를 넘지 못하던 다문화 관련 연구 논문의 규모 역시 2007년에는 무려 세 자리 수로 급증한 바 있다.

누군가의 표현을 빌자면 정말 “있을 법하지 않은 일”(unlikely transition)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이런 뜨거움의 속내를 조금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님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다문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집단적인 열광과 헌신에 관해 국제 사회와 국내의 이주민 당사자들이 그다지 곱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드라이브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들은 냉혹하기만 하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999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로 인해 한국 사회가 인종주의로 경도될 위험성을 우려하며 “다민족주의를 인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09년 10월 발표된 “대한민국 이주노동자의 권리보고서”에서 국제 엠네스티는 한국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강제 노동과 미등록 노동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1회용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압축한 바 있다. 2003년 1월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한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인권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외국인 어린이 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주민 당사자들의 한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냉담한 평가 역시 국제 사회에 못지않다.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승인과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에 터하고 있기 보다는, 자신들의 절박한 욕구를 왜곡하는 생뚱맞고, 무례하며, 위선적인 한국인들만의 잔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대접”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 보아주는 것이며,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주의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교육’과 ‘지원’ 그리고 ‘상담’이 필요한 “특별한 사람들”일 뿐이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것은 다문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수행되는 ‘한국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하는 양자택일의 선택지일 뿐이다. 그들에게 다문화는 그렇게 또 하나의 외적인 강제에 불과하다.

“다문화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지요. 먼저 해결될 문제들이 있거든요. 미등록 문제, 노동허가 문제, 가족 동반 허용 문제, 그런 것들 말이예요. 그런 것들이 되고 나서 다문화를 이야기하면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 없으면서, 다문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얘기에요.”
(방글라데시, 가씨)

1) 이주: 한국에서도 다문화주의가 공론화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이주민 인구의 증가였다. 1990년에 5만 여명이 채 되지 않았던 외국인 인구의 규모는 2007년에는 1백 6만 여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인구의 2%를 상회하는 규모였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문제의식이 전사회적인 의제로 확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그들의 ‘규모’일 뿐이다.

한국에서 외국인의 인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그것은 맞다. 중요한 것은 그들 대부분이 임시 체류자들일 뿐이라는 점이다. 정확하게 말해 강요받는 임시체류자들이라는 점이다. 한국에서 외국인들의 정주는 원천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국은 반이민 국가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이주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이지만 그들에게는 가족동반은 물론이요,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개정된 고용허가제가 이주 노동자의 한국 체류 기간을 최장 4년 11개월로 제한한 것도 이런 이유 탓이다.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런 기회 자체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2) 인권: TV 광고조차 “외모”와 피부색에 관계없이 “능력이 중시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지는 사회”로 다문화사회를 칭송하고 있지만,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순혈과 단일”에 대한 강박이다. 순혈과 단일에 대한 강박은 전근대적인 인종주의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작년에 있었던 보노짓 후세인 교수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는 백주 대낮에 “더럽고 냄새나는 새카만 새끼”라는 모욕을 당해야만 했다. 검은 얼굴의 외국인이 ‘감히’ 한국인 여성과 함께 있었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체제와 시민사회를 지배하는 “살색의 논리”는 여전히 완강하기만 하다.

한국에 체류하는 가장 큰 이주민 집단인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다문화주의의 확산 이후 더욱 참담하게 악화되고 있다. 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규약과 한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빗대어 한 이주노동자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동물 취급을 받으며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절규한 바도 있다. 다문화주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은 (오히려) 더욱 노골적인 배제와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탈법적인 인권 침해가 수없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등록 체류자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 및 강제 퇴거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고등법원의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지도부는 정부의 표적 단속에 의해 거의 붕괴되었다. 대부분의 단속 반원들은 사복 차림이다.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동의나 허락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들의 79.5%가 수갑을 사용했으며, 4.5%는 경찰 장구를 사용했다. 전자 충격기 및 그물 총을 사용하는 경우도 2.9%에 달했다. 그 과정에서 2003년 이후에만 무려 100여명의 이주민들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1월로 예정된 G20 정상 회담을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합법적인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허가제 역시 사업주들의 이익과 권한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개악되었다. 정책 공간에서 뿐만 공론장과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주변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원 활동의 방향을 일부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영역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공론장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과 조응해 외국인 혐오 단체들의 활동은 더욱 공격적이 되어 가고 있다.

이주 아동 및 청소년들의 상황 역시 암담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아동의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5월 현재 만 18세 미만의 이주 아동은 총 체류 외국인의 9.7%에 해당하는 107,689명에 달한다. 2008년의 49,682명에 비해 무려 85.6%가 증가한 규모다. 2006년 25,000명에 불과했던 이주아동의 규모가 3년 만에 무려 4배로 늘어난 것이다. 유엔 아동인권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 협약들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어떠한 경우에도 비차별적인 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 아동 협약 비준 국가이다. 그것은 유엔 아동인권 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주 아동의 규모가 증가하는 속도만큼이나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이주 아동의 규모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아동 가운데 80%는 공교육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리라는 것이 활동가들의 추산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이다. 그들은 “태어난 곳은 있지만 고향이 없고, 살아있지만 태어난 적이 없는” 유령같은 존재들이다. 그들의 규모는 최소한 1만 여명에 달한다.

3) 소수자: 소수자(minority)란 “표준적이며 중심화된 인간상”에 포용되지 않(거나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로서 “다수자 혹은 다수적 권력배치 방식에 대립”하는 위상을 갖는다. 그들은 “체제가 만들어낸 희생(제거)되어야만 하는 무적자(無籍者)로서의 타자들”이다. 유대인, 동성애자, 혼혈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주민은 소수자의 한 범주이다. 다문화가 포용해야 하는 문화적 소수자 집단은 이주민 보다 훨씬 광범위한 셈이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는 ‘외국인들 (가운데 일부)

만의 문제'로 논의의 지평이 부당하게 축소되어 있다.

4) 문화: 국제적인 이주가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시민권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이제 시민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1세대), 경제적·사회적 권리(2세대)를 넘어 문화적 시민권((Cultural Citizenship, 3세대)까지를 의미한다. 문화적 시민권이란 제도, 사회, 심리적인 차원에서 차별과 모욕을 당함이 없이 고유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역설적이게도 한국 다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다문화는 단문화적일 뿐만 아니라 반문화적이기까지 하다. 이주민들의 문화적 다양성은 존중되지 않는다. 그들은 무례하게도 '어느 국가 출신의 이주민'이라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호명된다. 국가로 수렴될 수 없는 문화적 다양성들이 (국가 문화라는) 단일 문화(mono-culture)로 환원되며, 정형화된다. 다채로운 삶의 방식들이 관람과 전시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동질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5) 정리: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외국인들의 규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문화의 위상은 '외국인'들만의 문화적 적응이나 갈등의 문제로 협소하게 규정된다. 다문화주의에 불구하고 문화적 소수자의 인권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다문화주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의 성숙은 지체되고 있으며 문화 집단 사이의 인종적 서열화가 초래된다.

<표 1> 다문화주의의 이상형적 특성들과 한국적 변형

	이상형적 특성	한국적 변형
근대성의 재규정	탈근대와 몰근대의 조정	근대의 강화
철학	타자의 주체화	주체됨의 확인
정치	민주주의의 심화: 사회와 문화(감정)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퇴행
정책	시민권의 재규정: 탈민족국가 시민권(개방적 포용)	제한된 노동권, 비시민권 (동화 혹은 추방)
개인	정체성의 기원들의 상대화: 민족-국가의 상대화	정체성의 기원들의 강화: 민족-국가의 재동원
운동	반자본주의, 반시장주의, 탈물질주의	공리주의

5. 한국의 다문화 공간과 안산

‘다문화’와 관련된 안산의 명성은 화려하다. 이주민 당사자들에게 안산은 “이주노동자들의 수도”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주민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 때 원곡동은 “한국의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한 번은 거쳐가야 하는 일종의 중간 기착지 같은 곳”이었다.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안산은 “국경없는 마을”로 더욱 유명한 곳이다. 안산 원곡동에서는 한국의 공론장에 다문화주의가 소개되기 훨씬 이전인 1990년대 중반부터 이주민 지원 엔지오의 주도로 “국경없는 마을” 운동이라고 명명된 다문화 공동체 운동이 시도된 바 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이주 행정 선도 지자체”라는 명망이 더해짐으로써 다문화와 관련된 안산의 위상은 좀 더 확고해져

가고 있다. 안산시는 이주 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전국 최초’의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이주민 전담부서(산업지원소 외국인복지과) 설치, 2005년), ‘전국 최초’의 ‘외국인주민센터’ 개소(2007년), ‘전국최초’의 ‘거주 외국인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2009년 3월), 전국 최초의 ‘다문화 특구’ 지정(2009년 5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안산은 “한국에서 ‘다문화 공간’이라는 이름에 가장 걸맞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박세훈 외, 2009). 한국을 대표하는 ‘다문화 1번지’ ‘다문화 으뜸 도시’ 등으로 공론장에 빈번하게 소개되는 곳 역시 안산이다. 다문화와 관련된 타지자체와 비교될 수 없는 안산의 독보적인 위상은 그간 안산시가 2007년 이주 행정 우수 지자체 대통령 표창, 2009년 경기도 최우수 국제화 사례 표창, 2009년 대한민국(이주민) 인권 도시 상 수상 등 이주 및 다문화 행정과 관련된 각종의 상들을 독식해오다시피 했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안산시는 최근에 보다 의욕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안산시는 “다문화 중심 도시, 이주 인권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 개발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을 기반으로 현재 “다문화중심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담론 공간 혹은 정책 공간을 벗어나는 순간, 다문화와 관련된 원곡동의 화려한 ‘명성’들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만다. 이주민 당사자들에게 원곡동은 가파른 생활비용의 상승과 강화된 미등록 체류자 단속으로 인해 “기회만 된다면 떠나고 싶은” 위험하고 불편한 공간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임차 상인들인 내국인 주민들에게 원곡동은 지가 및 임대료 상승과 방문객의 급감에 기인하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당장이라도 가게를 정리하고 싶지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버텨야’ 하는 “곧 떠나고 싶지만 당장은 떠날 수조차 없는” 갈등의 공간일 뿐이다. 이주민 지원 활동가들에게 원곡

동은 다문화주의의 ‘환상과 실상’, 혹은 한국 다문화주의의 이중성을 명증히 보여주는 모순의 공간일 뿐이다. 그들에 따르면 “원곡동에 ‘다문화 공동체’나 ‘국경없는 마을’에 해당하는 ‘실체’는 전혀 ‘없다’”. ‘다문화 1번지’ 원곡동은 관이나 미디어 혹은 일부 엔지오에 의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철저하게 기획된 이미지이거나,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세팅 혹은 가설적인 예측”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안산에는 두 개의 원곡동이 존재하는 셈이다. ‘다문화 으뜸 도시’로 알려진 공론장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원곡동과 ‘떠나고 싶지만 갈 곳이 없는 뜨내기들의 집합소’로서의 현실의 원곡동이 그것이다. 불행하게도 다문화와 관련된 안산 지역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공론장의 관심이 적극적이 되어갈 수록, 원곡동 ‘주민’들의 삶은 나날이 불안정해져만 간다. 원곡동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제도와 환경, 시민사회 인프라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이주민 대중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전시와 관람 혹은 체험의 공간으로 가파르게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원곡동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문화간 소통과 공존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다. 개방과 관용이라기보다는 단절과 고립이다.

도대체 왜 이런 모순된 양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알려진 원곡동과 원곡동의 현실은 왜 이리도 차이가 나는 것일까? 안산시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선구적이며 열정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다문화 1번지’ 혹은 ‘다문화 으뜸 도시’로 추앙받는 원곡동의 변화에 대해 정작 원곡동의 주민들과 안산 시민들이 일관되게 냉담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첫째, 원곡동의 변화가 ‘아래로부터’ 그리고 ‘내부로부터’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그리고 ‘외부로부터’ 추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원곡동의 변화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원곡동의 (내외

국인) 주민들과는 무관한 변화임을 의미한다. 둘째, 주민들을 소외시킨 채 ‘위로부터’ 그리고 ‘외부로부터’ 추동되는 원곡동의 변화가 원곡동의 주민들 가운데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 셋째, 원곡동의 문제가 안산 지역 사회 전체와 관련된 통합적이며 맥락적인 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한다. 넷째, 다문화주의를 공간과 제도 그리고 일상적 삶에서 구현하기 위한 철학의 빈곤 그리고 그에 기인하는 장기적인 전망과 방법론의 부재는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철학의 부재로 인해 원곡동의 ‘다문화’는 여전히 ‘관주도’로 한국인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6. 몇 가지 쟁점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이처럼 독특하고 이중적이다. 뜨겁지만 동시에 석연치 않다. “있을 법하지 않은” 놀라운 적극성과 사회적 확산력을 보여주지만 효과는 미약하거나 이율배반적이기까지 하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다문화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연동되어 전개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사태들을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로 포괄하는 것이 적절한 일일까? ‘이 모든 난점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동시에 회피할 수 없는, “문화적 전망”이자 정치적 전망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과 내가 원하는 다문화주의는 어떤 것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안적인 시도가 모색될 수 있는 것일까?

<참고 문헌>

- 오경석. 2007a.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 오경석. 2007b. 「다문화와 민족국가?: 상대화인가, 재동원인가?」. 공간과 사회 28호. 한국공간환경학회.
- 오경석. 2009. 「한국 다문화주의의 미래: 안산지역과 내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 다문화주의 가족, 교육 그리고 정책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학중앙연구원.
- 오경석. 2010a. 「누구를 위한 다문화주의인가?: 안산지역이주민지원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사회정책연구 17호.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오경석. 2010b. 「다문화주의라는 불편한 환상」. 경기문화2호. 경기문화재단.
- 오경석. 2010c. 「‘다문화 중심’ 도시의 이상과 현실: 안산 원곡동의 경험」. 월간국토 4월. 국토연구원.
- 오경석. 2010d. 「다문화중심도시는 어떻게 가능한가?」. 2010 비교문화연구소 학술 심포지엄자료집-외국인 공동거주지, 21세기 계토를 읽다, 잇다, 열다. 성대비교문화연구소.
- 오경석. 2010e. 「다문화거버넌스는 어떻게 가능한가?」. 안산다문화포럼 자료집. 안산외국인주민센터.국토연구원.한양대다문화연구소.
- 한건수. 2008. 「비판적 다문화주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모색을 위한 인류학적 성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역음. 『다문화사회의 이해』. 동녘.
- Hui-Jung Kim. 2009. *Immigration Challenges and Multicultural Responses: the State and the Dominant Ethnic and Immigrants in South Korea*. A dissertation for the Ph. D(Soci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Oh Kyung-seok· Oh Jae-lim. 2009.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Korea and Responses of Civil Society*. Paper presented at Workshop on Global Civil Society and Justice. Korea University & LSE.

세미나자료집 10-S13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인 쇄 2010년 8월 16일

발 행 2010년 8월 1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예림피앤디 전화 (02)2263-0483 대표 한필연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